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만원”을 “7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u> 미만인 어린이	2. <u>12세</u>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 <u>1만원</u>	1. ----- - : <u>7천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9